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94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문진석·백승아·최혁진
김동아·김용만·문정복
한민수·박 정·김문수
박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은 한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더라도 명목소득의 증가만으로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중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6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3퍼센트
1,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8만원 + (1,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88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퍼센트)
8,0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	958만원 +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
1억6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3,358만원 +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2억5천만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	6,778만원 +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3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778만원 + (3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3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228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9,728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과세표준</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6퍼센트</td></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td>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td></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td>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td></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td></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td></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td></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td></tr> <tr> <td>10억원 초과</td><td>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td></tr> </tbody> </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과세표준</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1,6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3퍼센트</td></tr> <tr> <td>1,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td>48만원 + (1,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td></tr> <tr> <td>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td><td>388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퍼센트)</td></tr> <tr> <td>8,0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td><td>958만원 +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td></tr> <tr> <td>1억6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td><td>3,358만원 +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td></tr> <tr> <td>2억5천만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td><td>6,778만원 +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td></tr> <tr> <td>3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억778만원 + (3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3퍼센트)</td></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1억7,228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td></tr> <tr> <td>10억원 초과</td><td>3억9,728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퍼센트)</td></tr> </tbody> </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6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3퍼센트	1,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8만원 + (1,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88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퍼센트)	8,0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	958만원 +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	1억6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3,358만원 +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2억5천만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	6,778만원 +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3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778만원 + (3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3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228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9,728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퍼센트)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6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3퍼센트																																						
1,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8만원 + (1,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88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퍼센트)																																						
8,0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	958만원 +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																																						
1억6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3,358만원 +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2억5천만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	6,778만원 +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3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778만원 + (3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3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228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9,728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